

동명사회봉사규정

[규정명 변경 2020.5.1.]

2013.04.01. 제정 2014.03.28. 일부개정 2015.11.27. 일부개정 2017.03.01. 일부개정
2017.10.01. 일부개정 2020.05.01. 일부개정 2021.09.01. 일부개정 **2022.04.01. 일부개정**

<학생·장학봉사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학이념 및 학칙에 따라 지역사회, 국가, 인류에 공헌 봉사할 동명사회봉사단(이하 '봉사단'이라 한다)의 운영 및 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7.03.01.)

제2조(사업) 봉사단에 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.(개정 2017.03.01.)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
2.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
3. 사회봉사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
4. 사회복지시설·복지관련 기관봉사 활동
5. 공공기관 봉사활동
6. 지역사회 봉사활동(농어촌 봉사활동 등)
7. 교내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
8. 기타 사회봉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

제3조(조직) ① 사회봉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명사회봉사단(이하 '봉사단'이라 한다.)을 둔다.(신설 2015.11.27.)

② 봉사단 운영에 관한사항은 동명사회봉사단운영및봉사학점인정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15.11.27.) (개정 2017.03.01.,2020.5.1.)

③ **학생·장학봉사팀**은 봉사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.(신설 2015.11.27.)

(**개정** 2017.03.01.,2017.10.01.,**2022.4.1.**)

제4조(봉사단) (삭제 2015.11.27.)

제5조(학점인정) ① 학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봉사활동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팀에서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5.11.27.,2017.10.01., 2021.9.1)

② 삭제 <2021.9.1.>

제6조(사회봉사활동인증서 발급) ① 삭제 <2014.3.28.>

② 사회봉사단 학생 및 교직원이 사회봉사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일 경우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인증서를 발급한다. (개정 2014.3.28.)

1. 연간 200시간 이상 Gold
2. 연간 150시간 이상 Silver
3. 연간 100시간 이상 Bronze

제7조(동명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) ①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명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(개정 2017.03.01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**학생·장학봉사팀장**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14.3.28.,2017.10.01.,**2022.4.1.**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4.3.28., 2015.11.27., 2017.03.01., 2020.5.1.)

1. 장단기 사회봉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동명사회봉사규정, 동명사회봉사단운영및봉사학점인정시행세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사회봉사기관 외 교외 및 해외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 조치) 이 규정의 제5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 3 조 (다른 규정의 폐지) 사회봉사활동규정, 사회봉사단규정, 직원봉사활동규정은 이 규정일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.

제 4 조 (경과조치) 본 규정의 제3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는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4조, 제7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0000 - 000호

사회봉사 활동 인증서

인증구분 : ○○○○

학 과 : ○○○○

학 번 : ○○○○

성 명 : ○ ○ ○

봉사시간 : ○○시간

위 학생(상기인)은 본대학교 동명 사회봉사단원으로서 대학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·국가·인류에 봉사하는 봉사인으로서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기에 이 인증서를 수여함.

20 년 월 일

동명대학교 총장

(인)